

인생의 마지막 순간,

연명의료 결정제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National Center for Management of Donating Tissues

목적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 ✓ 치료효과가 없는 의학적 시술을
 - ✓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고 결정함으로써
 - ✓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 제도입니다.
- * 단, 연명의료 유보·중단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은 무엇인가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환약제 투여



인공호흡기 작동



체외생명 유지술



수혈



환약 상송제 투여



담당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 (의학적 판단) + (본인의사 확인) →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 ✓ (의학적 판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담당의사 2인의 판단
- ✓ (본인의사 확인 방법) ①사전연명의료의향서, ②연명의료계획서,
③가족2인 진술, ④(환자의사 확인 불가 시) 가족 전원합의

연명의료의 유보·중단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능한가요?

- ✓ 연명의료의 유보·중단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검색 QR



연명의료계획서란?

- ✓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 ✓ 본인의 연명의료 유보·중단 의사를 작성하는 문서이며,
- ✓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 ✓ 향후 자신의 임종과정에 대비해서
- ✓ 연명의료 유보·중단에 관한 의사를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에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등록기관 검색 QR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은?

- ✓ 법에 따라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 ✓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될 때
- ✓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을 거쳐
- ✓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해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1855-0075, 수신자부담 1422-25, 🌐 www.lst.go.kr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심폐소생술

심장마비가 발생할 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함으로써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법

부작용 흉부 압박으로 갈비뼈 골절과 혈흉 및 기흉, 기도삽관으로 치아 손실 및 목소리 손상 등 발생 가능

혈액 투석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혈액 속 노폐물이 배출되게 하는 의학적 기술

부작용 카테터 삽입으로 인한 혈관 외상, 출혈, 감염 등 발생
혈액응고제 사용으로 인한 출혈 위험 발생 가능



항암제 투여

암을 축소, 억제, 제거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의학적 시술

부작용 항암제가 정상세포를 손상시켜 위장장애, 탈모증 등 발생 가능

인공호흡기 착용

스스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 호흡부전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도와주는 방법

부작용 기도삽관이나 기관절개술로 인해 치아나 기도 손상, 식도 천공, 피하기증 및 출혈 등 발생 가능





체외생명유지술

심각한 호흡부전 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 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치료로 통상적인 전문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는 심정지 환자에게 체외순환장치를 사용하여 인공 순환을 유지하는 방법

부작용 출혈, 응고 장애, 허혈, 공기색전증, 혈전색전증 등 발생 가능

수혈

수혈은 정맥에 정맥관을 삽입하여 혈액을 투여하는 시술로 신체가 혈액의 일부를 생성할 수 없거나 혈구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을 때 또는 피를 많이 흘렸을 때 요구될 수 있는 치료 방법

부작용 미열이나 피부발진 또는 체액 과부하 등 발생
그 외 부적합 혈액 수혈, 알레르기, 급성 폐 손상, 감염 등 문제 발생 가능



혈압상승제 투여

쇼크, 중증 저혈압,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일 때 혈관을 수축시켜 인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혈관 작용제

부작용 지속적인 혈압상승제 투여 시 사지괴저 등 합병증 유발 가능

기타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연명의료계획서와의 차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반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 의사와 함께 작성

연명의료계획서

- 대상: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작성: 환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
- 작성 및 이행: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대상: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 작성: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

◆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신청기관

여수, 광양, 순천 방면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보기
여수시 보건소	830m	전라남도 여수시 동문로 99 여수시보건소 동부도시 보건지소	061-659-4315	
(의)삼호의료재단 여수시립요양병원	4820m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5길 29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	061-653-9119	
남해군 보건소	18.6km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6 남해군보건소	055-860-8723	
광양시보건소	30.6km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광양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61-797-4125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31.7km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1길 24	061-720-7127	
순천시보건소	34.4km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32	061-749-6844	
하동군보건소	36.5km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1	055-880-6784	
사천시보건소	41.7km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055-831-3726	
고흥보건소	46.1km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등암3길 5	061-830-5562	
의료법인 행복한의료재단 경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48.1km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서삼로 1110-39, 경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055-794-2900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이 가능합니다(동법 제14조).
다만,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 설치·등록이 어렵다면 윤리위원회 업무수행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용윤리위원회와 업무수행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등록하면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Q 사망하는 모든 환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상황에서의 응급환자, 집에서 사망하는 환자 등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고자 하는 환자가 아니라면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른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면 됩니다.

Q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는 같은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입니다. 호스피스란 말기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팀이 호스피스 대상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합니다.

Q 환자가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했다면, 어떠한 치료도 하면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지속됩니다.

Q 가족이 없는 환자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무연고자나 독거노인 등 가족이 없는 경우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 표시를 했다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없고, 의식도 없는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미리 준비하는 삶의 마무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원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피착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118-2 <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은?

